

2025

공무원 | 변리사
민법개론(기초)

총칙 물권법 채권법

엠북 코리아

공부혁명!
mbook.kr

- ✦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✦ 휴대폰에 저장해 즉시 사용
- ✦ 휴대폰 화면에 최적화
- ✦ 형광펜, 색연필로 표시 가능
- ✦ 마음대로 지우고 저장

도서명 : 공무원, 변리사 민법(기초)

ISBN : 979-11-94286-23-3

발간일 : 2024-12-03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hanmail.net

정가 : 14,000원



민법입문

[목차]

제1편 민법총칙(p3)

제2편 물권법(p134)

제3편 채권법(p183~261)

제1편 민법총칙

[목차]

제1장 통칙

제2장 인

제3장 법인

제4장 물건

제5장 법률행위

제6장 기간

제7장 소멸시효

제1장 통칙

제1절 서설

1. 민법

가) 형식적으로 민법전, 고유한 의미의 민법
- 실질적 민법과 일치않음

나) 실질적

- 실체법
- 민사에 관한 법률 중 특별사법과 절차법
제외한 사법의 일반법
- 특별사법이 아니라 일반사법
- 재산/신분에 관한 법
- 민간 상호간에 관한 법

다) 가족법은 보수성, 재산법은 합리성

2. 기본원칙

가. 근대민법

1) 소유권절대(자유)

- 사유 재산권 존중

2) 사적자치

- 계약자유

· 체결여부, 상대방선택, 내용, 방식

- 법률행위자유

3) 과실책임(자기책임)

- 고의/과실로 타인에 손해를 입힌 때만

손해배상

4) 추상적 인격

나. 현대민법(수정원리)

1) 소유권상대

- 권리의 공공성/사회성

-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
- 신의성실의 원칙, 권리남용금지
- 2) 계약공정
- 3) 무과실책임(위험책임)
- 4) 구체적 인격

다. 우리민법은 근대민법 3대원칙 수정

- 1) 소유권절대
 - 소유자는 법률 범위내 소유물 사용, 수익, 처분
- 2) 계약자유
 -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한 때 그에 의함

- 약관법은 계약공정 원칙 도입

3) 과실책임

- 공작물소유자책임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등에 무과실책임, 위험책임 도입

3. 용어

가. 제3자

-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

- 범위 제한될 수 있다

나. 선의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

- 악의는 알고 있는 것

다. 대항하지 못한다

-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

법률행위의 효력 주장못함

- 제3자는 효력 주장 가능

라. 간주

- 법규에 의한 의제

- '본다'로 표현

- 추정보다 효력 강함

· 추정과 달리 반증으로 번복못함

- 실종선고 받은 자는 기간 만료시 사망 간주

마. 추정

- 편의상 잠정적으로 사실의 존부 인정

- 반증시 추정의 효과 발생안함

4. 해석

- 법의 의미/내용을 명확히 함

- 법률문제

- 일반적 확실성과 실체적 타당성의 조화

· 문리해석, 반대해석, 형식적 논리해석은

일반적 확실성에 적합

· 유추해석과 목적적 논리해석은 구체적

타당성에 적합

5. 효력

- 소급효 인정

-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형법처럼 엄격하지

않음

-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

국민에게 적용

- 속인주의/대인고권

· 외국에 있는 국민 포함, 모든 국민에 적용

6. 권리의 충돌

- 채권자 파산시 채권자평등의 원칙 적용

-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

우선하지는 않음

-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

- 대항요건 갖춘 부동산 임차권은 나중에

성립한 전세권에 우선

7. 권리능력

- 권리는 자연인, 법인이 행사
-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과 (법률이 인정하는) 법인만 인정
-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강행규정(당사자 합의로 배제못함)

(비교) 소송법상 당사자능력

- 민법상 권리능력과 불일치
- 자연인/법인 외 비법인 사단/재단도 인정

제2절 법원 (제1조)

'민사에 관해 법률 규정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함'

가) 성문법주의, 관습법과 조리의 법원성 인정

- 적용순서는 **법률**(성문법, 민법), **관습법**, **조리**

나) 법률

- 민법전, 민사특별법, 조약, 명령, 규칙, 자치법규, 조례

다) 관습법

- 분묘기지권, 관습법상 법정지상권, 동산 양도담보, 사실혼,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과실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인방법은 판례상 인정
-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성문법 보충(보충적 효력설, 다수설, 판례)

제3절 권리의 행사와 한계

1. 개요

- 권리는 법에 의해 권리주체에 주어진 힘
- 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(작위), 하지 않아야 할(부작위) 법률상 구속
-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평등
- 상품권, 입장권 등은 무기명채권

2. 신의성실의 원칙

- 2조1항 '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함'

가. 의의

-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원칙
- 권리의 공공성
- 채무의 경미한 미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아님

나. 파생원칙

1) 모순행위금지

- 영미법상 금반언과 유사
-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금지

2) 실효의 원칙

- 장기간 권리를 주장않은 경우 실효

3) 사정변경의 원칙

- 중대한 사정변경시 계약해제 등 가능

- 민법상 규정없고 판례도 부정적

3. 권리남용금지(2조2항)

'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

권리남용이 되고 정상적 법률효과 발생안함'

제2장 인 (자연인)

제1절 능력

3~17조

mbook.kr

1. 권리능력

가. 의의

1) 3조 '사람(자연인)은 생존한 동안
권리/의무의 주체'

- 권리/의무 주체가 될 자격/지위
- 의무능력과 동의어
- 출생함으로써 권리능력가짐

2) **강행규정**

-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못함
- 취득/소멸시점에 대한 합의는 무효

3) 모든 자연인은 평등한 권리능력

- 외국인도 법령/조약에 금지없는 한 내국인과

같은 권리능력

- 제한능력자도 차등없다

· 상시 정신병자도 권리능력

나. 태아

1) 전부노출설(통설)

- 모체에서 완전노출시 출생간주

2) 원칙은 권리능력없음

- 채무불이행인한 손해배상청구, 인지청구,

증여, 사인증여 **못함**

- 단, 부의 인지받을 수 있다

3)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인정

- 개별적 보호주의

- 불법행위에 의한 직접적 피해자되는 때
출생간주

· 예) 모체에 잘못된 약물투여가 기형의
원인이 된 때 손해배상청구권있음

- (채무불이행이 아니라) 불법행위에 대한
손해배상청구권

· 위자료 청구가능

- 재산상속, 대습상속, 유류분, 유증, 인지에
대해 출생 간주

· 유언자 사망시 태아였던 자에 대한 유증
유효

- 단, 계약 제외

4) 학설

가) 판례는 정지조건설(거래안전)

- 권리주체아니나 출생시 소급해 권리얻음

나) 해제조건설

- 출생않아도 제한적 권리가짐

- 유산/사산시 권리가 소급해 소멸

다. 종기

1) 사망시 권리능력 종료